

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912 |
|----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: 2009. 11. .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개정이유

- 가. 기한만료('09. 12. 31.) 한시정원 감축 기능 재배치
- 나. 시의회 업무용 버스 신규 구입에 따른 운전인력 보강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 - 정원총수 : 6,201명
 - 집행기관의 정원 : 3,398명
 - 소방안전본부·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: 2,200명
 -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: 509명
 - 의회사무처의 정원 : 94명
- 나.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(안 별표 3)
- 다. 한시정원에 관한 사항(안 별표 4)

3. 정원 조정내역

- 가. 기한만료('09. 12. 31) 한시정원 감축 : 5급 이하 14명
 - 인천방문의 해 추진 : 12명
 - 걸스카웃 대회 추진 : 2명

나. 증원(감축인력 기능 재배치) : 7개 부서 5급 이하 14명

- 회계계약심사 업무 1명
- 아동청소년 업무 2명
- 로봇랜드 조성업무 1명
- 자전거도로 업무 1명
- 관광마케팅 업무 4명
- 제93회(2012년) 전국체전 준비업무 4명
- 종합건설본부 검단구획정리 사업 1명

다. 직급조정

- 통신8급 1명 → 통신5급 1명(ITS 업무 보강)
- 간호7급 1명 → 간호6급 1명(건강증진 교육프로그램 운영)

라 운전직(운전8급) 부서 이동

-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 →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체사항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3399명”을 “3398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93명”을 “94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,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(제4조제1항 관련)

| 직급별 | 기관별 | 총계 | 본청 및 소속기관 | | | | 의회 사무처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|--------------|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
| | | | 소계 | 본청 | 직속기관 | 경제자유 구역청 | |
| 총 계 | | 6,201 | 6,107 | | | | 94 |
| 정무직 소계 | | 1 | 1 | | | | |
| 일반직 소계 | | 2,484 | 2,421 | | | | 63 |
| 1급 | | 1 | 1 | | | 1 | |
| 2급 | | 1 | 1 | | | 1 | |
| 2급·3급 | | 1 | | | | | 1 |
| 3급 | | 19 | 19 | 10 | 2 | 4 | 3 |
| 3급·4급 | | 1 | 1 | 1 | | | |
| 4급 | | 107 | 105 | 57 | 6 | 16 | 26 |
| 5급 이하 | | 2,354 | 2,294 | | | | 60 |
| 별정직 소계 | | 47 | 41 | | | | 6 |
| 1급 상당 | | 1 | 1 | 1 | | | |
| 4급 상당 | | 10 | 4 | 1 | 3 | | 6 |
| 5급 상당 이하 | | 36 | 36 | | | | |
| 연구직 소계 | | 136 | 136 | | | | |
| 연구관 | | 20 | 20 | | 16 | | 4 |
| 연구사 | | 116 | 116 | | | | |
| 지도직 소계 | | 23 | 23 | | | | |
| 지도관 | | 2 | 2 | | 2 | | |
| 지도사 | | 21 | 21 | | | | |
| 소방공무원 소계 | | 2,200 | 2,200 | | | | |
| 소방정 | | 12 | 12 | 4 | 8 | | |
| 소방령 이하 | | 2,188 | 2,188 | | | | |
| 교육공무원 소계 | | 509 | 509 | | | | |
| 총장(학장) | | 2 | 2 | | 2 | | |
| 교수·부교수· 조교수나 전임강사 | | 413 | 413 | | 413 | | |
| 조교 | | 94 | 94 | | 94 | | |
| 기능직 소계 | | 801 | 776 | | | | 25 |

[별표 4]

한 시 정 원(제4조제2항 관련)

| 구 분 | 직 종 | 직 급 | 정원 | 존속기한 | 비 고 |
|-----|-----|------|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총 계 | 계 | | 48 | | |
| | 일반직 | 3급 | 1 | | |
| | | 4급 | 4 | | |
| | | 5급이하 | 42 | | |
| | 기능직 | | 1 | | |
| 본 청 | 일반직 | 5급이하 | 3 | 2010.3.31 | - 행정안전부 수습사무관 |
| | | 3급 | 1 | 2010.8.31 | - 2014아시아경기대회 지원 |
| | | 4급 | 4 | | |
| | | 5급이하 | 39 | | |
| | | 기능직 | 1 | 2010.8.31 | - 2014아시아경기대회 지원 |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제2조(정원의 총수) (생 략)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3,399명</u></p> <p>2. ~ 3. (생 략)</p> <p>4. 의회사무처의 정원 : <u>93명</u></p> | <p>제2조(정원의 총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3,398명</u></p> 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의회사무처의 정원 : <u>94명</u></p> |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| | |
|--------------|--|
| 관계법령 | <input type="checkbox"/>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28조 (한시정원) ○ 제29조 (직급별 정원) ○ 제30조 (정원의 규정) |
| 관련법규 정비대상 | “해 당 없 음” |
| 관련자료 | “해 당 없 음” |

관 계 법 령 발 취

제28조 (한시정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.
-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(相計) 조정할 수 없다.
- 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.
-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.

제29조 (직급별 정원)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30조 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- 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 한다)
- 2. 본청·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
- 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- 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- 5.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·도의 5급 이하(시·군·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

의 규칙으로 정한다.

-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 하거나 임용제청 할 수 있다.
- ⑤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